

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.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3. 10. 이선 위원장외 3인

나. 회 부 일 자 : 2003. 10. 14

다. 상 정 일 자 : 2003. 10. 14

(제11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)

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의회운영위원장 이 선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국내여비 지급기준이 상향조정되어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

다. 주요내용

- 국내여비 기준단가 인상 (별표1)

국내여비 지급 기준표(제8조 제1항 관련)

(단위 : 원)

| 구 분 | 철도운임 | 선박운임 | 항공운임 | 자동차운임 | 현지교통비 (1일당) | 숙박비 (야당) | 식 비 (1일당) |
|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의 장 부의장 | 1등급 | 2등정액 | 정 액 | 정 액 | 10,000 | 46,000 | 25,000 |
| 의 원 | 2등급 | 2등정액 | 정 액 | 정 액 | 10,000 | 25,000 | 18,000 |

1. 화순군내에서의 여행이나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. 다만, 화순군내라 하더라도 벽지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.
2. 철도운임 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,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가리키며, 당해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.

3.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 기준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조례가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문찬주)

○본 조례안은 국내여비 기준단가인상 조례안으로 숙박비를 의장, 부의장은 41,000원에서 46,000원으로 의원은 22,000원에서 25,000원으로 개정한 조례안으로 관련 법규의 저촉 및 절차상 허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질의답변요지

"생략"

5. 토론요지

"생략"

6. 심사결과

「원안가결」

7. 첨 부 : 화순군의회위원의정활동비·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·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·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“별표1”을 “별지”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현 행>

[별표 1]

국내여비 지급 기준표(제8조 제1항 관련)

(단위 : 원)

| 구 분 | 철도운임 | 선박운임 | 항공운임 | 자동차운 임 | 현지교통비 (1일당) | 숙박비 (야당) | 식 비 (1일당) |
|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의 장 | 1등급 | 2등정액 | 정 액 | 정 액 | 10,000 | 41,000 | 25,000 |
| 의 원 | 2등급 | 2등정액 | 정 액 | 정 액 | 10,000 | 22,000 | 18,000 |

1. 화순군내에서의 여행이나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. 다만, 화순군내라 하더라도 벽지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.
2. 철도운임 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,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가리키며, 당해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.
3.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 기준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조례가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<개 정 안>

[별표 1]

국내여비 지급 기준표(제8조 제1항 관련)

(단위 : 원)

| 구분 | 철도운임 | 선박운임 | 항공운임 | 자동차운임 | 현지교통비 (1일당) | 숙박비 (야당) | 식비 (1일당) |
|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의장 부의장 | 1등급 | 2등정액 | 정액 | 정액 | 10,000 | 46,000 | 25,000 |
| 의원 | 2등급 | 2등정액 | 정액 | 정액 | 10,000 | 25,000 | 18,000 |

1. 화순군내에서의 여행이나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. 다만, 화순군내라 하더라도 벽지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.
2. 철도운임 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,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가리키며, 당해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.
3.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 기준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조례가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.